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6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김영호ㆍ이병진ㆍ정성호

김동아・고민정・강득구

송재봉ㆍ이상식ㆍ박희승

모경종 • 이광희 • 박용갑

조계원 • 유준병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 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은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취득· 처분하도록 하고,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 련한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학교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심의·의결 없이 임의로 학교법 인의 재산을 취득·처분한 경우 벌칙에 처하고,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 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행법의 실효 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제6항, 제73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2 항제3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학교법인의 임원은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·의결 없이 임의로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7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8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7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 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8조(재산의 관리 및 보호) ①	제28조(재산의 관리 및 보호) ①		
~ ⑤ (생 략)	~ ⑤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⑥ 학교법인의 임원은 제16조		
	제1항제1호에 따른 이사회의		
	심의·의결 없이 임의로 학교		
	법인의 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		
	서는 아니 된다.		
제73조의2(벌칙) (생 략)	제73조의2(벌칙) <u>①</u> (현행 제목		
	외의 부분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②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8조		
	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		
	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		
	하의 벌금에 처한다.		
제74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7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학교법인의 이사장, 감사 또	②		
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			
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			
또는 이사)가 다음 각 호의 어			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		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			
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3의2.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4		

	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
	<u>경우</u>
4. ~ 10. (생 략)	4. ~ 10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